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서 욱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항공작전기지 중 헬기예비작전기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항의 보호구역 및 항공작전기지 위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한 개정임.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구역 명칭의 현행화 (별표1, 별표2)

- 1)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군항의 보호구역 범위 및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로 정하고 있음.
- 2) 군항의 보호구역 범위 및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의 명칭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

나. 항공작전기지 중 헬기예비작전기지의 설치 근거 마련 (별표2)

- 1) 항공작전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, 지원항공작전기지, 헬기전용작전기지, 예비항공작전기지(비상활주로, 헬기예비작전기지, 민간비행장)로 구분
- 2) 항공작전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제2항에 따라

항공작전기지 종류별 비행장 코드 및 위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
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반영되어 있으나, 헬기예비작전기지는 누락
되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임.

- 3) 헬기예비작전기지를 군사시설로서 보호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
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법한 설치
근거를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1) 중 “진해시”를 “창원시 진해구”로 하고, 같은 목 2) 중 “마산시”를 “창원시 마산합포구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2) 중 “진해시”를 “창원시 진해구”로 하고, 같은 목 5) 중 “마산시”를 “창원시 마산합포구”로 한다.

별표 2 제1호하목 중 “청원군”을 “청주시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“진해시”를 “창원시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청원군”을 “청주시”로 하고,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표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표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	G - 505	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
러.	G-532	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
처.	G-228	경기도 연천군
다. 헬기예비작전기지		
1)	G-162	경기도 연천군
2)	G-227	경기도 연천군
3)	G-233	경기도 포천시

4)	G-235	경기도 연천군
5)	G-321	강원도 철원군
6)	G-406	강원도 양구군
7)	G-412	강원도 인제군
8)	G-413	강원도 고성군
9)	G-418	강원도 평창군
10)	G-701	전라북도 남원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1]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(제5조제3항 관련) 1. 육상구역 가. 통제보호구역 1) 경상남도 <u>진해시</u> 현동, 경화동, 앵곡동, 제황산동, 행암동 및 소사동 웅동 수원지 일원 2) 경상남도 <u>마산시</u> 구산면 구북리(계도) 일원 3) ~ 4) (생략) 나. 제한보호구역 1) (생략) 2) 경상남도 <u>진해시</u> 중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3) ~ 4) (생략) 5) 경상남도 <u>마산시</u> 구산면 중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6) ~ 7) (생략)	[별표1]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(제5조제3항 관련) 1. 육상구역 가. 통제보호구역 1) 경상남도 <u>창원시 진해구</u> 현동, 경화동, 앵곡동, 제황산동, 행암동 및 소사동 웅동 수원지 일원 2) 경상남도 <u>창원시 마산합포구</u> 구산면 구북리(계도) 일원 3) ~ 4) (현행과 같음) 나. 제한보호구역 1) (현행과 같음) 2) 경상남도 <u>창원시 진해구</u> 중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3) ~ 4) (현행과 같음) 5) 경상남도 <u>창원시 마산합포구</u> 구산면 중 동쪽 수역의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6) ~ 7)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[별표2]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(제6조 관련) 1. 전술항공작전기지 가.~파. (생략) 하. K-59 충청북도 <u>청원군</u> 거.~너. (생략) 2. 지원항공작전기지 가. K-10 경상남도 <u>진해시</u> 나. (생략) 다. K-60 충청북도 <u>청원군</u> 라.~아. (생략) 자. G-505 충청남도 <u>연기군</u> 차.~타. (생략) 3. 헬기전용작전기지 가.~더. (생략) 러. G-532 충청남도 <u>연기군</u> 머.~저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예비항공작전기지 가.~나. (생략) <u><신설></u>	[별표2]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(제6조 관련) 1. 전술항공작전기지 가.~파. (현행과 같음) 하. K-59 충청북도 <u>청주시</u> 거.~너. (현행과 같음) 2. 지원항공작전기지 가. K-10 경상남도 <u>창원시</u>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K-60 충청북도 <u>청주시</u> 라.~아. (현행과 같음) 자. G-505 세종특별자치시 <u>연서면</u> 차.~타. (현행과 같음) 3. 헬기전용작전기지 가.~저. (현행과 같음) 러. G-532 세종특별자치시 <u>연기면</u> 머.~저. (현행과 같음) 처. G-228 경기도 <u>연천군</u> 4. 예비항공작전기지 가.~나. (현행과 같음) <u>다. 헬기예비작전기지</u> 1) <u>G-162 경기도 연천군</u>

현행	개정안
	2) <u>G-227 경기도 연천군</u> 3) <u>G-233 경기도 포천시</u> 4) <u>G-235 경기도 연천군</u> 5) <u>G-321 강원도 철원군</u> 6) <u>G-406 강원도 양구군</u> 7) <u>G-412 강원도 인제군</u> 8) <u>G-413 강원도 고성군</u> 9) <u>G-418 강원도 평창군</u> 10) <u>G-701 전라북도 남원시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	
연 락 처	(02) 748 - 5844